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가합53661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可 고 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C

변론 종결 2016. 9. 9.

판결 선고 2016. 10. 5.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4,776,260원 및 그 중 513,822,573원에대하여는 2016. 6. 10.부터, 426,895,081원에 대하여는 2016. 6. 13.부터 2016. 7.13.까지는 연 10%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2016. 3.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2016. 4. 4. 접수 제1963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의 대표인 피고 B은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주식회사 한국시티은행(이하 '한국시티은행'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신용보증 계약일자	보증금액 (원)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일자	대출금액 (원)
1차 보증	2013. 4. 25.	425,000,000	2014. 4. 24.	한국시티은행	2013. 4. 26.	500,000,000
2차 보증	2014. 6. 9.	540,000,000	2015. 6. 8.	중소기업은행	2014. 6. 12.	600,000,000

나. 이후 위 1차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이 2014. 4. 24.에서 2016. 4. 22.로, 2차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이 2015. 6. 8.에서 2016. 6. 8.로 각 연장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서, 피고 A이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폐업하였을 경우, 원고가 대위변제를 하기 전이라도 보증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피고 A이 위 대출금 채무의 이행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 0.5%의비율을 가산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대위변제를 한 때에는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대위변제로 인해 취득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 등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A은 2016. 4. 22. 위 1차 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한 대출원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소외 각 대출은행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여, 원고는 2016. 6. 10. 소외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2차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513,822,573원(= 대출원금 509,895,450원 + 이자 3,927,123원)을, 2016. 6. 13. 소외 한국씨티은행에게 이 사건 1차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426,895,081원(= 대출원금 425,000,000원 + 이자 1,895,08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마. 위 각 대위변제로 인해 발생한 1, 2차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위약금은 합계 1,033,270원이고,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3,025,336원이다.

바. 한편, 피고 A은 2016. 3. 29. 자신의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B의 동생 소외 D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4. 4. 피고 C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된 각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A은 자금난을 겪다가 2016. 4. 22. 위 1차 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한 대출원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사고가 발생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실제로 소외 각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라 원고가 피고 A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 A의 무자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A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초하여 한국시티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1억 원을 대출하였다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직후 결국 그대출원금의 지급을 연체하게 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A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A이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피고 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4) 피고 C의 선의항변

가) 피고 C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기존의 선급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그 당시 위 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 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가사 피고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에 선급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7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C의 대표이사 소외 D은 피고 A의 대표인 피고 B의 동생인 점, 피고 A,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에 수년간 고철 등을 거래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A의 위 대출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이르러서야 피고 C의 선급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그 설정 당시 선급금 채권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이 피고 A에 실제로 선급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C이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 C이 선의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A, C 사이에 사해행위로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A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6. 4. 4. 접수 제1963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흥권, 판사 박승혜, 판사 신성욱